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2023. 1.



산업통상자원부



목 차 (1)

I. 사업개요

1. 사업목적	1
2. 사업개요	1
3. 용어 정의	1
4. 사업추진 체계	2
5. 사업추진 절차	4

II. 추진단계별 운영 절차

1. 신청 자격	5
2. 협약 신청	6
3. 협약 심사	7
4. 협약업체 선정 결과통보 및 협약 체결	9
5. 보증보험 가입 및 조건부 지원금 지급	10
6. 품질검사 운영	12
7. 품질관리 컨설팅	14
8. 협약 기간	14
9. 재협약	16
10. 협약해지	16
11. 특별관리 업체 운영	18

목 차 [2]

III. 협약업체 지원

1. 협약지원 총괄	19
2. 협약물 지원	19
3. 컨설팅 세부사항	20
4. 공급유류 품질확인 지원	21

IV. 의무준수 및 위반 시 협약해지 절차

1. 의무준수 사항	24
2. 의무준수 위반 시 협약해지 절차	25

[별표1]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 협약 BI	26
[별표2] 권역별 품질관리 컨설팅 담당	27
[별지1]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 협약신청서	28
[별지2] 위임장	30
[별지3]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 선정 평가표	31
[별지4]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 협약서	32
[별지5] 의무사항 이행각서	33
[별지6] 품질인증주유소 관리대장	41
[별지7] 공급유류 품질확인 시험분석 결과서	42
[별지8] 품질관리 컨설팅 현장점검표	43
[별지9] 공급유류 품질확인 관리대장	44

I. 사업개요

1. 사업목적

한국석유관리원이 주유소가 판매하는 석유제품을 인증·관리함으로써 소비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주유소를 활성화하여 국내 석유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

2. 사업개요

- 주관기관 : 산업통상자원부(석유산업과)
- 운영기관 : 한국석유관리원(사업관리팀)
- 사업기간 : 2023. 1. 1. ~ 2023. 12. 31.
- 사업개념 :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에 협약한 주유소가 판매하는 석유제품에 대한 인증·관리를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 활성화 유도를 목적으로 함

3. 용어 정의

- (주관기관/운영기관) 산업통상자원부/한국석유관리원
- (석유사업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자가상표 주유소) 정유 4사(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상표 표시 이외의 주유소를 말함
- (품질인증주유소)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에 협약한 주유소를 말함
- (자부담 주유소) 정부 지원 사업비 예산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품질인증주유소
- (재협약 주유소) 품질인증주유소가 협약 기간 만료로 재협약하여 가입 기간을 연장한 주유소를 말함

- (전산보고) 석유사업법에 따라 「석유제품 거래상황보고」를 전산으로 보고하는 것을 말함(서면, 전자보고 제외)
- (조건부 지원금) 품질인증주유소가 협약 기간에 의무준수 사항을 지키겠다는 조건으로 운영기관이 협약업체에 협약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함

4. 사업추진 체계

4.1 주관기관

주관기관은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 운영을 총괄하고,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라 사업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음

4.2 운영기관

운영기관은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 사업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함

- 4.2.1.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 신청접수, 심사, 선정 등 일련의 운영
- 4.2.2.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에 참여한 품질인증주유소 품질관리
- 4.2.3. 기타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에 필요한 사업

4.3 협약 비용

- 협약 비용은 조건부 지원금과 협약업체가 부담하는 사업자 부담금을 합한 금액을 말함
- 품질인증주유소는 협약 비용(조건부 지원금+사업자 부담금)을 운영기관에 납부해야 함

- 운영기관은 품질인증주유소가 협약 기간에 「IV. 의무준수 및 위반 할 때 제재 사항」의 「1. 의무준수 사항」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품질인증주유소에 협약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 가입요건을 갖춘 협약 희망업체가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에 가입 할 수 없는 경우, 주관기관과 운영기관은 사업자 부담금을 별도로 책정하여 품질인증주유소(자부담 주유소)로 운영할 수 있음
-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조건부 지원금 부족 예산이 발생할 때 한국석유관리원 자체 수수료 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음

4.4 협약 운영 유의사항

- 품질인증주유소는 협약 마크를 사업장 내 장소에 설치하고,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 품질인증주유소는 운영기관이 품질검사, 품질관리 컨설팅 등 운영기관이 실시하는 업무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품질인증주유소는 BI(Brand Identity)가 표시된 협약마크 등 관련 홍보물을 주유소 내에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음
- 운영기관은 품질인증주유소의 협약해지 또는 만료할 때 협약 물품을 즉시 회수하며,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시설물 훼손(페인트 도색 등) 등에 대해 법률적, 금전적 책임을 지지 않음

5. 사업추진 절차

처리 절차		단계별 세부 내용
1	신청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 이내(품질부적합은 1년 이내) 석유사업법에 따른 비정상 적발이 없는 경우(세부사항 참조) - 임차사업자 제외(단, 가족간임대차 등 일부 허용)
2	협약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팩스 또는 우편(등기) 등 접수 - 석유판매업 등록증 사본 등 관련 구비서류 제출 - 접수창구 : 운영기관(사업관리팀)
3	협약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 신청내역에 대한 서류심사(신규 및 재협약) - 2차 : 신청업체에 대한 현장심사(신규)
4	협약업체 선정 결과통보 및 협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인증프로그램 선정 평가표상 80점 이상인 업체 및 재협약 업체(서류확인) - 협약 가능 유무에 대한 평가 결과통보 - 협약대상임을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협약비용을 운영기관으로 납입 - 협약서 발송(협약일 지정) - 협약물품 지원
5	보증보험 가입 및 조건부 지원금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업체(자부담 협약업체 제외)는 협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조건부 지원금의 두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신용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운영기관에 신용보증보험 증권을 제출 - 운영기관은 신용보증보험 증권을 제출받은 날부터 7근무일 이내에 조건부 지원금을 지급
6	품질검사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요건에 따른 연 6~20회 품질검사 - 불법시설물 설치 여부에 대한 수시점검
7	품질관리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제품 품질확인 지원(상시) - 품질관리 컨설팅 지원
8	협약만료 및 재협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만료 도래한 주유소 재협약 여부 결정 - 재협약 의사에 따른 변경사항 확인 및 재협약 - 협약비용 납입 및 협약물품 지원
9	협약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유사 상표로 전환 등 해지사유에 해당할 경우 - 협약업체가 조건부 지원금 지급에 대한 의무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협약해지 및 지원금 환수

II. 추진단계별 운영절차

1. 신청 자격

1.1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에 협약하고자 하는 주유소가 다음 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협약 자격 조건 미달로 간주

구 분	세부 내용	비고
임차 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유소를 임차한 경우 (단,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가족 간 임대차인 경우 ② 고속도로상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고속도로가 소유한 시설물을 이용하여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고속도로가 직접 운영 또는 임차사업자가 운영하는 주유소로서 한국 도로공사 또는 민자고속도로가 확인해주는 경우 ③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사업자간 임대차계약 후 잔여 기간이 1년 이상으로 확인되고, 임대차 계약한 주유소의 토지나 건축물 또는 시설물 중 소유권 전체가 동일 사업자로 확인되는 경우 ④ 「석유제품 거래상황보고」를 전산보고 방법으로 1년 이상 보고하고 있는 업체의 경우 	석유판매업 등록증상 대표자와 시설물 소유주와 비교확인 및 임대차 계약서 확인
상표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물량구매계약[※]을 체결한 정유사 상표 지명주유소는 기입 가능 	
석유사업법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 3년 이내 석유사업법 제29조, 제39조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제8호)을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통보(공포)된 경우(자영알뜰주유소 제외) 최근 1년 이내 석유사업법 제27조, 제39조제1항제2호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통보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경우, 석유사업법상 무거운 처벌을 받은 결과를 적용하되 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 	기간산정은 결과 통보일을 기준으로 적용
석유사업법 보고사항 보고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석유사업법 제38조에 따라 운영기관으로 보고하는 「석유제품 거래상황보고」를 보고하지 않거나 전자 또는 서면으로 하는 경우 → 전산보고만 허용 	

주) 명칭 불문하고 정유사와 주유소간 계약에 따라 일정 약정물량에 대해서는 정유사로부터 공급받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다른 회사의 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약방식 또는 거래상황보고 내용 중 판매물량의 일정량을 계약 정유사 상표 외의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2. 협약 신청

2.1 신청

-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에 협약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협약 신청서 및 관련 제출서류를 운영기관에 팩스, 방문, 우편 등으로 신청하여야 함
 - 사업관리팀 전용 팩스(전자 팩스) 번호: 031-8016-4865
 - 위임장을 첨부한 대리인의 신청접수도 가능

<제출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 ※ 협약 신청서의 대표자 및 소재지는 반드시 석유판매업 등록증과 같아야 함
- ※ 관련 제출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발급일 기준)된 것이어야 함
- ※ 신용보증보험 증권 가입자는 석유판매업 등록증 대표자와 같아야 하며, 피보험자는 운영기관(한국석유관리원)으로 해야 함
- ※ 협약 계약서의 계약자는 석유판매업 등록증 대표자와 같아야 함
- ※ 주유기 및 저장탱크 배치도면은 소방서 자료가 없을 때, 수기 작성자료 허용
- ※ 저장탱크 청소확인 증빙서류는 청소일로부터 5년 이내 증빙자료만 인정됨
단, 석유판매업을 신규로 등록한 경우에는, 저장시설 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 합격확인증으로 갈음하여 기간을 산정할 수 있음
- ※ 임대차계약 주유소의 소유권 증빙서류는 토지·건축물은 등기부등본을 시설물은 계약서 등 소유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 제출서류의 오기재 또는 허위 기재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사업자가 부담
- ※ 제출서류는 대표자 서명(또는 인감 날인), 법인일 경우 대표이사 서명(또는 법인인감) 후 제출하여야 함
- ※ 제출 자료는 협약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 ※ 상기에 포함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기관 방침에 따름

2.2 협약 제출서류

-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 협약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석유판매업 등록증 사본(변경 이력 포함) 1부
- 위험물제조소 및 이동탱크저장소(보유한 경우) 완공검사합격확인증 각 1부

- 주유기 및 저장탱크 배치도면(수기작성 또는 소방서 자료 등) 1부
- 건축물대장(최근 3개월 이내) 1부
- 저장탱크 청소확인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 주유소 운영권 임대차 계약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위임장(별지 제2호 서식) 1부
- 임대차계약 주유소의 소유권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 물량구매계약서(해당자에 한함) 사본 1부
- 의무사항 이행각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 등기부 등본 · 시설물 임차계약서 또는 소유권 증명 서류 1부

3. 협약 심사

3.1 신청자료 검토

- 운영기관은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에 협약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제출한 협약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대하여 다음 각호를 검토함
 - 3.1.1. 신청 주유소의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 협약 자격 조건 충족 여부
 - 3.1.2. 협약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제출한 제출서류의 적정성 여부
- 운영기관은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에 협약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협약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검토한 후 II.1. 신청 자격에 따른 협약 자격 미달 조건에 미달할 경우, 당사자에게 그 사실(협약 불가)을 통보하여 종결함
 - 다만, 운영기관은 협약 불가 통보를 유선으로 갈음할 수 있음

3.2 현장실사

- 운영기관은 신청자료 검토 결과, 협약하고자 하는 석유판매업자가

자격 요건을 충족할 사업장의 현장실사를 실시하여 협약 신청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함

- 운영기관은 현장실사 시 별지 제3호 서식 「품질인증프로그램 선정 평가표」를 작성하고, 그 평가 결과를 산정함

- 「품질인증프로그램 선정 평가표」의 세부 적용기준은 다음 표와 같음

평가항목	세부 내용 (별지 제3호에 따라 평가)
평가 기준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 협약 신청서상의 신청일을 적용운영현황의 경우 결과통보일을 기준으로 적용
불법 시설물 보유여부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가짜석유제품 제조,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 열을 가하는 등 부당하게 부피를 증가하여 판매하기 위한 영업시설을 설치 또는 개조하거나, 그 설치 또는 개조한 시설을 보유한 경우를 평가 ☞ 확인 시 협약 자격 미달
석유 사업법 준수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석유사업법 제27조, 제29조, 제39조의 위반 여부(행정처분 통보(공표)된 경우)를 차등평가 ☞ 위반행위 행정처분 통보(공표) 경과 연도에 따라 차등 배점(40~50점)
소비자 만족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최근 1년간 운영기관에 접수된 소비자 신고접수(신고접수일 기준)를 차등평가 ☞ 신고접수 건수에 따라 차등 배점(7~10점)
대표자 변경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최근 3년간 대표자 변경 횟수(등록수리일 기준)를 차등평가 ☞ 석유판매업 등록증 기준 대표자 변경 횟수에 따라 차등 배점(2~5점)
기타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품질관리(탱크 청소), 가격표시판 설치, 안전관리(화재 예방 등) 및 편의시설에 대해 차등평가
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영업 배상 책임보험 가입 시 가점 3점을 부여

-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에 협약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운영기관의 현장실사 시 다음 사항을 협조하여야 함

<현장실사 시 신청사업자의 협조 사항>

- ※ 신청사업자는 운영기관 현장실사에 성실히 응해야 함
- ※ 운영기관 현장평가원은 현장 평가 시 신청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함
- ※ 현장실사 당일 신청사업자의 대표 또는 관계인(소장 등)은 반드시 사업장에서 운영기관 현장 평가에 참여하여야 함
- ※ 운영기관 현장평가원은 필요시 입회한 신청사업자 관계자에게 추가적인 자료열람 또는 시설물의 점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함
- ※ 운영기관은 현장실사 시 신청사업자의 실사 방해, 기피 등의 행위가 있을 때 협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즉시 현장실사를 중단할 수 있음

- 「품질인증프로그램 선정 평가표」는 신규 협약업체의 경우 현장실사를 실시하여 그 평가 결과를 산정함

4. 협약업체 선정 결과 통보 및 협약 체결

4.1 현장실사 결과처리

- 운영기관은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에 협약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별지 제3호 서식 「품질인증프로그램 선정 평가표」 평가결과 총 80점 이상을 획득한 주유소를 협약 주유소로 최종 선정함
 - 현장실사 결과 80점 미만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신청사업자는 1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평가 부문 중 서비스 분야에 대해 재실사를 요청할 수 있음
- 운영기관은 신청사업자에게 최종 협약업체 선정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4.2 협약 비용 납부

- 품질인증주유소는 운영기관으로부터 최종 협약대상임을 통보받은

날부터 근무일 기준 7일 이내에 연간 협약 비용(VAT 포함)을 운영기관으로 납부해야 함

- 납부계좌 : 한국석유관리원(예금주), 우리은행 309-04-101893
- 운영기관은 협약 신청 주유소가 최종 협약대상임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협약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협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협약대상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4.3 협약 체결

- 운영기관은 품질인증프로그램에 가입 신청한 사업자 중 협약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신규 : 총점 80점 이상, 재협약 : 서류 확인)와 선정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 협약 체결
- 협약은 운영기관이 주유소를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업무 상황에 따라 협약서 전달(우편, 전자문서 등)로 갈음할 수 있음
- 운영기관은 품질인증주유소에 협약물을 지급하고, 재협약의 경우 기존 협약물 훼손 정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운영기관은 품질인증프로그램 협약 현황을 품질인증주유소 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에 관리함
- 품질인증주유소는 협약 이후 「II. 추진단계별 운영 절차」 「2. 협약 신청」 중 「신규협약 제출서류」 또는 「재협약 제출서류」의 변경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까지 변경 내용 관련 자료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5. 보증보험 가입 및 조건부 지원금 지급

5.1 신용보증보험 가입

- 협약업체는 조건부 지원금 지급기준 준수에 대한 이행 담보로서

조건부 지원금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신용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권을 보증보험사로부터 받아 운영기관에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피보험자 : 한국석유관리원(사업자 등록번호 : 129-82-02417)
- 신용보증보험 가입 금액은 품질인증주유소가 운영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조건부 지원금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가입
- 신용보증보험 가입 보험사

업체	담당 부서	보증내용	보험기간
서울보증보험	동대문지점 (070-7827-3278)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 금 등 반환지급보증	협약일로부터 1년

5.2 조건부 지원금 지급

- 운영기관은 품질인증주유소가 협약 기간에 「IV. 의무준수 및 위반 할 때 제재 사항」의 「1. 의무준수 사항」을 준수한다는 조건으로 협약 업체에 연간 협약 비용 중 일정 금액의 조건부 지원금을 지원함
- 운영기관이 품질인증주유소에 지원하는 조건부 지원금은 업체별 협약 차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급함
 - 협약 차수 1년 차 업체: 601만원(VAT 포함)
 - 협약 차수 2년 차부터 5년 차 업체: 323만원(VAT 포함)
 - 협약 차수 6년 차 이상 업체: 185만원(VAT 포함)
- 다만, 주관기관 또는 운영기관은 상황에 따라 연간 품질검사 횟수, 협약 비용 및 품질인증주유소 조건부 지원금 등 석유품질 인증프로그램 사업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가입요건을 갖춘 협약 희망업체가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에 가입

할 수 없는 경우, 주관기관 또는 운영기관은 사업자 부담금을 별도로 책정하여 품질인증주유소(자부담 주유소)로 운영할 수 있음

- 운영기관의 조건부 지원금 지급 시기는 품질인증주유소가 협약 이후 신용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권을 제출한 날로부터 7 근무일 이내에 품질인증주유소 대표자 또는 관계인의 계좌로 입금함(단, 운영기관의 입금확인은 온라인 계좌이체 확인서로 대체함)
- 조건부 지원금을 신규로 받는 업체의 선정은 아래의 평가 기준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정

평가구분	평가 항목	점 수		
		무	유	
운영 현황	불법 시설물 보유 여부	25		자격미달
	석유사업법 준수여부 ¹⁾	10년 이상 25	5년 이상~10년 미만 15	5년 미만 또는 신규업체 10
소 계		○ ○ 점/50점		
협약 기간	자부담 협약기간 ²⁾	24개월 이상 50	12개월이상~24개월 미만 25	12개월 미만 0
		○ ○ 점/50점		

6. 품질검사 운영

6.1 품질검사

- 운영기관은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 협약업체에 대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협약 횟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 6~20회 이상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운영기관 전산시스템(LIMS)으로 기록·관리함

1) 최초 협약일로부터 석유사업법 제27조, 제29조 또는 제39조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제8호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통보(공표)된 경우

2) 자부담 협약기간 산정 점수는 3구간으로 나눠 산정하며, 동일한 구간일 경우 먼저 협약한 업체를 우선하여 선정

- 1년 차 협약업체

구 분	품질인증프로그램 선정 평가표 득점		
	90점 이상	85점 이상~90점 미만	80점 이상~85점 미만
품질검사 횟수	12회/년	15회/년	20회/년

- 2년 차 이상 협약업체

구 분	협약 차수	
	2 ~ 5년 차	6년 차 이상
품질검사 횟수	8회/년	6회/년

- 자부담 주유소는 협약 차수와 관계없이 연 8회 이상 품질검사 시행

- 품질인증주유소의 품질검사는 석유사업법 제25조제2항 품질검사와 같은 절차에 따라 사전고지 없이 운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함
- 운영기관은 품질인증주유소의 품질검사 1회당 휘발유, 경유 제품에 대해 탄력적으로 총 3건 이내의 품질검사 시료를 채취할 수 있음

6.2 특별점검

- 운영기관은 필요할 때 품질인증주유소를 대상으로 석유사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39조제1항에서 행위의 금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특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운영기관 전산 시스템(LIMS)으로 기록관리함
- 품질인증주유소의 행위의 금지 준수 여부 확인 업무는 협약 기간에 1회에 한하여 품질검사 횟수를 갈음하여 시행할 수 있음

7. 품질관리 컨설팅

7.1 운영 방법

- 운영기관은 품질인증주유소의 「협약 품질검사」와 병행하여 협약업체에 대한 품질관리 컨설팅을 시행할 수 있음
- 운영기관은 품질인증주유소가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 BI를 적절하게 사용하는지 여부 및 기타 사업개선 의견 청취 등을 위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음
- 품질관리 컨설팅 주요 내용

구 분	세부사항
변절기 품질관리	· 계절별 품질기준이 변경 적용되는 시점 전월에 변경되는 항목 점검·안내
보관제품 수분 체크	· 자가 수분 점검을 위한 지시약 제공
석유사업법 유의사항 안내	· 석유사업법 개정사항 안내 · 석유제품 품질기준 변경 적용 안내(변절기 등) · 이동판매차량 운영 유의사항 안내 등
BI 관리	· BI의 적정 관리 안내 등

7.2 현장점검표 작성 및 조치

- 운영기관은 품질인증주유소에 대한 컨설팅을 시행할 경우 별지 제8호 서식 「협약업체 품질관리 컨설팅 현장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함
- 품질인증주유소는 운영기관이 시행한 협약업체 품질관리 컨설팅 결과를 참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8. 협약 기간

8.1 협약 기간

-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 협약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년으로 함

8.2 협약만료

- 운영기관은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 협약이 만료되기 30일 이전에 품질인증주유소(석유판매업 등록증 소재지)로 협약만료 예정일을 통보(우편 또는 전자우편(e-mail)으로)하여야 함
- 운영기관으로부터 협약만료 예정일을 통보받은 협약업체는 재협약 또는 협약해지 의사를 협약만료 예정일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운영기관에 유선으로 알려야 함
- 운영기관은 품질인증주유소가 재협약 또는 협약해지에 대한 의사 표시가 없으면, 재협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 협약업체가 재협약 의사가 없는 경우 협약이 만료되는 날 직후 자동으로 협약이 해지됨
 -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 협약이 해지된 주유소는 BI가 표시된 설치 협약물(현판, 자석 스티커 등)을 반납하여야 함
-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 협약업체가 재협약을 원하지 않을 경우, 협약일로부터 1년이 초과한 날부터 자동으로 협약이 만료된 것으로 봄

8.3 협약 기간의 연장

- 운영기관은 품질인증주유소가 석유사업법 제12조에 따라 지자체에 휴업신고를 한 경우, 최대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휴업 기간 만큼 협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협약 기간을 연장할 경우 품질인증주유소는 신용보증보험의 보험 기간을 휴업신고 기간 만큼 연장하고, 변경된 증권을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9. 재협약

- 운영기관에 재협약 의사를 알린 품질인증주유소는 협약만료 15일 전까지 「재협약 제출서류」를 운영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 등으로 제출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3. 협약 심사」~ 「4. 협약업체 선정 결과 통보 및 협약 체결」의 절차에 따라 품질인증주유소의 재협약을 진행함
 - 다만, 운영기관은 재협약을 신청한 협약업체가 「3. 협약 심사」 ~ 「4. 협약업체 선정 결과 통보 및 협약 체결」과정에서 협약요건에 위반되지 않으면 재협약을 1년씩 연장 할 수 있음
 - 협약 비용 납부(협약대상 선정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신용보증 보험 제출(협약일로부터 7일 이내) 및 조건부 지원금 지급(신용 보증보험 증권 제출 후 3 근무일 이내)은 신규협약 절차에 따름
- 재협약 업체는 현장실사를 생략하고 1년씩 자동연장함
 - 다만, 재협약업체의 불법 시설물 보유 여부 평가는 재협약 기간 내에 실시할 수 있음

9.1 재협약 제출서류

-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 협약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위임장(해당자에 한함, 별지 제2호 서식) 1부
- 의무사항 이행각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 물량구매계약서(해당자에 한함) 사본 1부

10. 협약해지

10.1 협약해지 기준

- 품질인증주유소가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 협약 기간 중 다음 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협약을 해지함

구분	협약해지 세부 기준
석유사업법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약 기간에 석유사업법 제27조, 제29조, 제39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8호) 위반으로 적발되어 행정처분이 통보(공표)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 기간에 석유사업법 제27조, 제29조로 위반되었으나 행정처분이 「경고」로 통보(공표)된 경우 협약해지 사유에서 제외 신규 협약 제출서류 또는 재협약 제출서류에 기재된 시설물 이외의 불법 시설물* 보유가 확인된 경우 * 비밀탱크, 이중탱크, 이중밸브, 리모콘, 불법엔코더 또는 프로그램 변조 메인보드 등을 이용한 비정상제품(가짜석유제품, 품질부적합 제품 등) 판매, 정량미달 판매 또는 인위적인 가열을 통해 양을 부풀리기 등을 목적으로 개조한 시설물,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에 따라 등록된 설비 이외의 시설물 중 변경등록이 불가능한 시설물
운영 주체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호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단, 품질인증주유소 대표자 사망,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명의변경, 개인사업자의 법인 설립 등 실질적인 사업 주체의 변경이 없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상표 표시 전환 및 물량구매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가상표 주유소가 아닌 정유 4사(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 오일뱅크, S-OIL 등) 상표 주유소로 전환이 확인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유사와 물량구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 정유 4사 상표 주유소가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 협약가입 중 물량구매 계약을 해지한 경우
허위 협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품질인증주유소가 제출한 「신규협약 제출서류」 또는 「재협약 제출서류」가 위조·변조되었거나 거짓 사실이 확인된 경우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업한 경우 사업자가 협약 취소를 원할 경우(단, 석유사업법 위반업체로 검사결과가 행정기관에 통보된 이후 자발적 협약해지 불가) 품질인증주유소가 협약 기간에 석유제품 거래상황 보고를 전산으로 하지 않는 경우(단, 운영기관의 사정으로 못하는 경우는 제외)

10.2 협약해지 통보

- 운영기관은 품질인증주유소가 협약 기간 중 「해지 기준」에 해당할 경우 협약업체에 우편 또는 전자우편(e-mail)으로 협약해지를 통보해야 함
 - 협약해지 통보를 받은 품질인증주유소는 협약해지를 통보받은 날부터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 BI」를 사용할 수 없으며, 지원받은 일련의 협약물을 바로 운영기관에 반납하여야 함
 - 협약을 해지한 경우 주유소에서 납부한 협약 비용은 환급되지 않음
- 협약해지를 통보받은 품질인증주유소는 이의가 있을 때 협약해지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음
 - 운영기관은 이의신청 업소가 제출한 서류를 재검토하여 최종 협약해지 기준 해당 여부를 통보하여야 함

11. 특별관리 업체 운영

11.1 특별관리 업체 지정

- 품질인증주유소가 협약 기간에 석유사업법 제27조, 제29조, 제39조를 위반으로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자 중 협약해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특별관리 업체로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함
- 위반 종류별 특별관리업체 지정 관리 기간
 - 3개년 특별관리 : 석유사업법 제29조, 제39조 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제8호)
 - 1개년 특별관리 : 석유사업법 제27조, 제39조제1항제1호

11.2 특별관리 업체 지원

- 운영기관은 특별관리 업체로 지정한 품질인증주유소를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과 특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협약 기간에 시행하여야 함

- 3개년 특별관리 대상 품질인증주유소 중 위반일 이후 2~3년 차 기간에 해당하는 업체는 연 1회 이상 특별점검을 제공하여야 함

III. 협약업체 지원

1. 협약지원 총괄

1.1 운영기관은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에 협약한 주유소에 대해 다음 표와 같이 지원함

구 분	세부 지원내용
협약 비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연간 협약 비용 중 당해 책정된 조건부 지원금을 지원 (단, 자부담 협약업체는 제외)
협약물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BI 적용 홍보물(품질인증 LED 현판 등)BI 이미지 제공(필요시 협약업체 자체 홍보활용) * 협약물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품질관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공급유류 품질확인 지원(시료용기 및 봉인지 포함)
품질관리 컨설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품질관리 컨설팅(현장점검표 작성 및 개선사항 안내)저장탱크 수분측정(간이테스트)용 지시약 제공
협약업체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한국석유관리원 홈페이지·SNS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한 홍보오피넷(Opinet)상에 협약 정보 공개모빌리티 플랫폼(T-map 등)에 협약 정보 공개

2. 협약물 지원

- 운영기관은 협약업체 품질관리를 위한 물품 지원이나 소비자가 쉽게 품질인증주유소를 알 수 있도록 협약물을 지원

2.1 협약물 지원 시기

- 협약 최초 가입할 때 또는 재협약 업체의 경우 하반기 1회 제공

2.2 협약물 지원 세부 내용

구 분	협약물 지원 내용
신규 협약업체	• 품질관리 매뉴얼, 수분지시약, LED현판, 자석스티커 등
재협약 업체	• 수분지시약, 자석스티커, 노후 협약물 등
장기협약업체	• 장기협약업체 인증현판(6년 차에 1회 제공)

3. 컨설팅 세부사항

3.1 컨설팅 시점

- 운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 컨설팅 시행
(품질검사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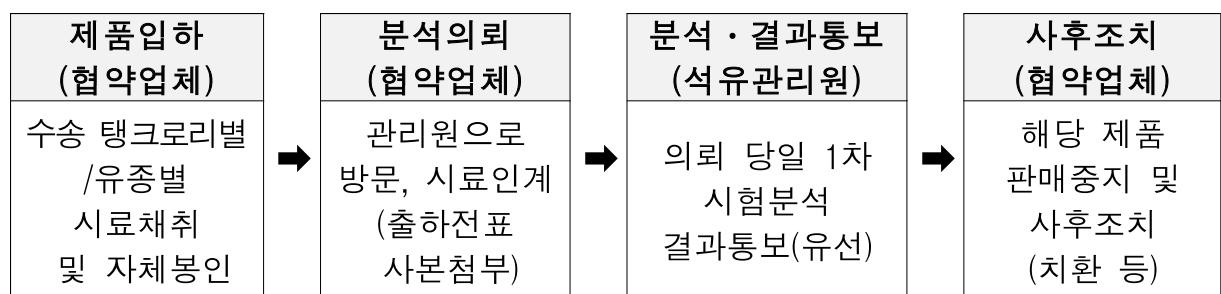
3.2 컨설팅 세부사항

- 협약물품 운영 컨설팅
 - 사업장 내의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 BI의 훼손 및 부착 여부를 점검하고 협약업체에서 추가로 홍보 중인 현수막 등 기타 홍보물에 대한 적정 사용 여부를 확인
 - 건물 내에 협약 현판이 적정하게 부착유지 되는지 확인
 - 가격표시판 내에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 BI가 적정하게 부착유지 되는지 확인
 - BI는 활용규격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
- 석유제품 품질관리 컨설팅
 - BI에 관한 확인 후 사업장 내 품질관리 상태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함
 - 석유제품 품질기준 변경 등 석유사업법 개정 동향

- 사업장 내 우수가 유류 저장탱크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함
(저장탱크 유류 주입구 및 맨홀 뚜껑 위치 및 높낮이를 확인)
- 운영기관은 협약업체 품질관리 컨설팅을 시행 후 「품질관리 컨설팅 점검표」를 작성하고 운영기관에 보관

4. 공급유류 품질확인 지원

- 품질인증주유소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제품을 공급받을 때 시료를 채취하여 관리원에 공급유류 품질확인을 직접 요청하고, 운영기관이 해당 제품의 품질 확인을 지원
- 공급유류 품질확인 절차



4.1 시료채취

- 공급유류 품질확인 필요 시 품질인증주유소 대표자(또는 관계자)가 직접 유류 저장탱크에 제품을 입고시키기 전에 채취하여야 함
- 수송용 탱크로리로부터 2가지 유종 이상을 입고 받을 때 유종별로 시료를 채취하여야 함
- 시료채취는 각각 다음 표와 같이 유종별로 실시함

유 종	채취시료 개수	1개당 채취량
자동차용 휘발유 (1호 또는 2호)	시료별 용기 1개 채취	0.5L 내외
자동차용 경유	시료별 용기 1개 채취	0.5L 내외

4.2 시료 봉인

- 시료채취 및 봉인은 운영기관에서 제공한 공급유류 품질확인 시료 용기와 봉인 용지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함
- 봉인은 품질인증주유소 대표자(또는 관계자)와 수송용 탱크로리 운전기사(또는 공급업체 관계자)가 운영기관에서 제공한 봉인용 지에 공동 날인(또는 서명)한 후 시료 용기를 봉인함

4.3 출하전표 징구

- 품질인증주유소는 수송용 탱크로리 운전기사(또는 공급업체 관계자)로부터 입고 제품에 대한 출하전표를 받아 보관하여야 함

4.4 품질확인 의뢰

- 품질인증주유소는 제품을 입고 받은 날부터 익일(근무시간 기준, 18:00이전)까지 석유판매업 등록증상 협약업체를 담당하는 운영기관(본부) 검사팀으로 채취 시료를 인계하여야 함
- 품질확인 시료를 인계받은 운영기관(본부) 검사팀은 별지 제9호 서식에 인계사항 및 시험분석 결과를 기록 유지하여야 함

< 공급유류 품질확인 요청 시 유의사항 >

- ※ 품질확인 요청 시료를 입고(출하전표 기준) 후 익일 근무시간 중에 의뢰된 제품까지 확인지원 (→ 익일 근무시간을 경과한 시료는 품질확인을 지원하지 않음)
- ※ 품질인증주유소가 품질확인을 위해 시료를 운영기관(담당 본부)에 인계할 때 해당 제품의 출하전표 사본을 반드시 운영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함
- ※ 품질확인 요청 시료는 품질인증주유소와 공급자 간 상호 봉인(시료용기의 입구를 봉인)하여야 함

(예시) 품질확인용 시료의 봉인 사례



<봉인 용지>



<봉인 사례>

4.5 품질확인 결과 안내

- 운영기관은 품질인증주유소로부터 품질확인용 시료(출하전표 사본 포함)를 인계받은 이후 시험분석 결과를 다음 표와 같이 통보함

인계 시각	시험분석 결과처리	결과처리 방법
09:00 ~ 15:00 이전	인계받은 당일 20:00까지	유선 알림
15:00 ~ 18:00 까지	인계받은 익일 12:00까지	유선 알림

주) 품질확인용 시료의 인계는 근무시간에만 가능

- 품질인증주유소는 유선으로 통보받은 품질확인 결과에 대해 필요할 때 운영기관으로 별도의 결과서 발행을 요청할 수 있음
 - 운영기관은 품질인증주유소의 요청이 있을 때, 공급유류 품질확인 시험분석 결과(별지 제7호 서식)를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음

4.6 품질확인 결과 활용 조치

- 품질인증주유소는 공급유류 품질확인 결과 비정상으로 의심될 경우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지하고 관련 시설물의 사용을 정지(자체 봉인)한 후 공급업체로부터 치환 등의 조처하여야 함
- 공급유류 품질확인용 시료는 품질인증주유소가 자발적 품질관리용으로 채취한 것으로서 시험분석 결과가 석유사업법에 따른 법적인 효력은 없음

IV. 의무준수 위반 시 협약해지 절차

1. 의무준수 사항

1.1 품질인증주유소는 협약 기간에 다음 표에서 열거한 석유 사업법을 준수하여야 함

구분	세부 준수사항
제29조	·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를 준수하여야 함
제39조 제1항	· 불법 영업시설의 설치 또는 사용(제1호, 제4호),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제2호), 인위적으로 열을 가하는 등 부당하게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하는 행위(제3호), 등유 등을 차량용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제8호) 등 행위의 금지를 준수하여야 함
제27조	·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의 판매 금지 등을 준수하여야 함

2. 의무준수 위반 시 협약해지 절차

2.1 운영기관은 품질인증주유소가 「1. 의무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다음 표에 따라 협약해지 절차 진행

구 분	해지 절차 세부사항
1단계	• 적발내용을 지자체에 통보(→ 지자체 행정처분 지원)
2단계	• 지자체의 행정처분(공표 등)
3단계 ^(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건부 지원금 전액 환수^{주1)} (단, 석유사업법 제29조^{주2)}를 위반하는 경우 조건부 지원금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 * 단, 석유사업법 제27조, 제29조, 제39조로 위반되었으나 행정처분이 '경고'로 확정된 경우는 제외
4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약물 회수(LED현판 등 지원한 협약물 일체)• 협약해지 후 3년간 재협약 불가 (석유사업법 제27조^{주2)}, 제39조제1항제2호 위반의 경우 1년간 재협약 불가)• 재협약 시 협약 비용 전액 사업자 부담• 요주의 업체로 중점관리(상시 모니터링 및 수시점검 병행)

- 운영기관은 해당 품질인증주유소가 「1. 의무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협약 시 제출한 신용보증보험社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 운영기관은 신용보증보험社로부터 받은 보험금을 협약물 및 홍보물 구매 재원으로 활용함

별표1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 협약 BI

□ 기본형



□ 색상 활용



별표2 권역별 품질관리 컨설팅 담당

지역	담당	전화	Fax	담당 부서	
		주소			
인천	검사1팀	031-702-0200	031-789-1639	수도권남부본부	
경기(남) ^{주1)}	검사2팀	(1353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안양판교로 1207			
경기(남) ^{주2)}	검사3팀				
서울	검사1팀	031-843-0200	031-841-0229	수도권북부본부	
경기(북) ^{주3)}	검사2팀	(11754)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로 72번길 16			
대전, 세종	검사1팀	044-864-0200	044-867-5774	대전세종충남 본부	
충남	검사2팀	(30036)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세종로 2178			
충북	검사팀	043-877-0200 (27738) 충북 음성군 맹동면 두레로 51-6	043-882-6263	충북본부	
광주	검사1팀	062-236-0200	062-943-4315	광주전남본부	
전남	검사2팀	(61012)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42			
전북	검사1팀 ^{주4)}	063-277-0200	063-278-5584	전북본부	
	검사2팀 ^{주5)}	(55316)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55			
부산	검사1팀	051-242-0200	051-260-6405	부산울산경남 본부	
울산	검사2팀	(46727) 부산시 강서구 범방3로 30번길 51			
경남	검사3팀				
대구	검사1팀	054-475-0200	054-472-1349	대구경북본부	
경북	검사2팀	(39450) 경상북도 구미시 인동36길 75-11			
강원	검사팀	033-345-0200 (25244)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추용로 71	033-345-5600	강원본부	
제주	검사팀	064-752-0200 (6305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상귀서길 3	064-745-5167		

- 주 1) 경기 광주시, 성남시, 양평군 여주시, 이천시, 하남시
 2) 경기 과천시, 광명시, 군포시, 김포시, 부천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평택시, 화성시
 3) 경기 가평, 고양,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연천, 의정부, 파주, 포천
 4) 전북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전주시, 정읍시, 진안군
 5) 전북 군산시, 익산시

[별지 제1호 서식]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 협약 신청서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 협약 신청서 (신규 / 재협약)

업체명	사업자등록 번호		
대표자	협약번호 호		
사업장 소재지	(우)		
	전화	() 휴대전화 :	팩스
	E-mail		
조건부 지원금 신청	신청금액		
	입금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지급조건	협약기간 동안 운영기관에서 규정한 의무사항 이행 ※ 의무사항 이행각서(별지 제5호 서식) 참조	
신청인	성명	대표자와의 관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안내

구분	내용
① 수집 · 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업체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fax번호, 휴대전화, E-mail, 계좌정보
②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목적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 협약업체 선정을 위한 주유소 정보처리, 협약업체 홍보 및 서비스 만족도 조사, 조건부 지원금 신청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위 사항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 협약이 불가능합니다.

위 조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에 협약(재협약)하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인(인감))

신청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인감))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귀하

[참고]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 협약 종류(신규/재협약)에 따른 첨부서류

신규

1. 석유판매업 등록증 사본(변경이력 포함) 1부
2. 위험물제조소 및 이동탱크저장소(보유한 경우) 완공검사필증 각 1부
3. 주유기 및 저장탱크 배치도면(수기작성 또는 소방서 자료 등)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조건부 지원금 입금계좌 사본 1부
6. 저장탱크 청소확인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7. 주유소 운영권 임대차 계약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8.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9. 위임장(별지 2호 서식)(해당자에 한함) 1부
10. 임대차계약 주유소의 소유권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11. 물량구매계약서(해당자에 한함) 사본 1부
12. 의무사항 이행각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재협약

1. 위임장(별지 제2호 서식)(해당자에 한함) 1부
2. 의무사항 이행각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3. 조건부 지원금 입금계좌 사본 1부(입금계좌 변경시)

[별지 제2호 서식] 위임장

위 임 장

본인은 귀 관리원에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 협약을 신청함에 있어 대리인에게 신청과 관련된 모든 권리·의무 등을 위임할 것을 확인하며, 이와 관련된 법적 책임은 본인이 감당할 것을 확인합니다.

대리인 소 속

생년월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위임인 소 속

생년월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20 . . .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 선정 평가표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 선정 평가표				
상표구분	<input type="checkbox"/> 알뜰(석유공사, 도로공사, 농협) <input type="checkbox"/> 비상표 <input type="checkbox"/> 정유사(SK, GS, 현대, S-OIL)			
접수번호		평가일		
주유소명		주 소		
평가부문	평가 항목	평가 지표	점 수	
운영 현황	불법 시설물 보유 여부	비정상제품 판매, 정량미달 판매 또는 가열을 통해 양을 부풀리기 위한 시설물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허가 설비이외 시설물의 보유여부 (※위와 같은 시설물 보유 시, 자격미달)	무	유
	석유유통 질서 준수여부 ³⁾	석유사업법 위반 금지행위 준수여부 (신청자격에 미달될 경우 자격미달로 간주)	15	자격미달
서비스	소비자 민원	최근 1년 간 관리원으로 소비자 민원이 제기된 건수 (한국석유관리원 내부자료 활용)	10년 이상	5년이상~10년미만
	대표자 변경		1회이하	3회
품질관리	가격표시판 설치	3년 미만	3년~5년	10년 이상
		가격표시방법 준수, 가시성 확보 등	10	9
안전관리 및 편의시설	책임보험 (※가점)	1회이하	2회	3회 이상
		소화기비치, 위험물관리 및 편의시설 구비(세차장·휴게실 등)	5	4
책임보험 (※가점)			3점 ※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 시 가점 3점을 부여하되, 서비스 부분 총계가 최대 35점을 넘지 아니한다.	
소 계			○○점/65점	
총 계			○○점/100점	

점검자 :

(서명 또는 인)

- 1) 최초 등록일로부터 석유사업법 제27조, 제29조 또는 제39조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제8호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통보(공표)된 경우
 2) 선정평가 점수 산정 시 협약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함

제 호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 협약서

업체명 :

대표자 :

한국석유관리원은 귀 업체를 석유품질인증
프로그램 협약업체로 선정하고, 그 증표로
이 협약서를 드립니다.

20 년 월 일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별지 제5호 서식] 의무사항 이행각서

① 협약차수 1년차 업체

의무사항 이행각서(1)

주유소(이하 ‘지원대상 사업자’)는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 협약을 위한 지원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한국석유관리원)로부터 조건부지원금을 지원받고, 향후 품질인증주유소의 운영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이행각서(이하 ‘각서’)를 제출한다.

제1조(목적) 본 각서는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에 협약한 품질인증주유소의 사후관리(의무이행사항, 제재사항 등)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반기준) 협약대상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및 한국석유관리원이 지원하는 사항 등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 운영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운영 매뉴얼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한국석유관리원 유권해석에 따른다.

*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개정으로 기준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시점부터 적용한다.

제3조(품질검사)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에 협약한 경우 연 12회~20회 이상 품질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제4조(협약비용)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 연간 협약비용 924만원(VAT 포함)을 최종 협약대상임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한국석유관리원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예금주 : 한국석유관리원, 우리은행 309-04-101893)

1. 협약비용에 대한 연간 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년(365일)으로 한다.

제5조(조건부 지원금) 협약대상 사업자는 제6조에 따른 의무이행 사항을 준수한다는 조건으로 제4조의 협약비용 중 일부인 601만원을 아래 사항에 따라 조건부 지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1. 협약대상 사업자는 조건부 지원금 지원에 따른 의무이행 사항을 준수한다는 증표로 지원금 601만원의 두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신용보증보험을 가입하고, 그 보험증권을 협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의무사항 이행각서(2)

제6조(의무이행 사항) 협약대상 사업자는 협약기간 동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함)에 따른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1. 법 제27조를 위반하여 품질기준에 맞지 않는 석유제품을 판매하지 않는다.
2.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하지 않는다.
3.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8호를 위반하지 않는다.

단, 석유사업법 제27조, 제29조, 제39조로 위반되었으나 행정처분이 ‘경고’로 확정된 경우는 제외

제7조(지원금 환수) 협약대상 사업자가 제6조에 따른 의무이행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신용보증보험을 통해 조건부 지원금을 환수한다.

단, 제6조제2호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지원금의 두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제8조(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협약대상 사업자는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 협약 및 운영과 관련하여 제출한 개인 또는 사업자 정보(품질검사 정보 등)를 원활한 사업의 운영을 위해 공익목적, 협약 만족도 조사 또는 홍보 등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제9조(변경사항 제출) 협약대상 사업자는 협약기간동안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변경 사항 발생 시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운영기관에 변경 내역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영주체(상호 및 대표자) 및 상표 변경
2. 물량구매계약서 변경(정유사 상표 주유소 등 해당자에 한함)
3.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변경(임대사업자 등 해당자에 한함)

제10조(기타) 협약대상 사업자는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 협약 만료 또는 해지에 따른 협약물 제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유소 시설훼손에 대해 일체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

제11조(유효기간) 이 각서는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 협약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단, 유효기간의 산정에 휴업(법 제12조에 따른 휴업신고) 등으로 주유소 영업을 하지 않은 기간(최대 6개월)은 제외한다.

20 년 월 일

○○주유소 대표자

(서명 또는 인)

② 협약차수 2년차부터 5년차 업체

의무사항 이행각서(1)

주유소(이하 ‘지원대상 사업자’)는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 협약을 위한 지원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한국석유관리원)로부터 조건부지원금을 지원받고, 향후 품질인증주유소의 운영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이행각서(이하 ‘각서’)를 제출한다.

제1조(목적) 본 각서는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에 협약한 품질인증주유소의 사후관리(의무 이행사항, 제재사항 등)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반기준) 협약대상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및 한국석유관리원이 지원하는 사항 등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 운영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운영 매뉴얼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한국석유관리원 유권해석에 따른다.

*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개정으로 기준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시점부터 적용한다.

제3조(품질검사)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에 협약한 경우 연 8회 이상 품질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제4조(협약비용)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 연간 협약비용 554만원(VAT 포함)을 최종 협약 대상임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한국석유관리원으로 납부하여야 한다.(예금주 : 한국석유관리원, 우리은행 309-04-101893)

1. 협약비용에 대한 연간 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년(365일)으로 한다.

제5조(조건부 지원금) 협약대상 사업자는 제6조에 따른 의무이행 사항을 준수한다는 조건으로 제4조의 협약비용 중 일부인 323만원을 아래 사항에 따라 조건부 지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1. 협약대상 사업자는 조건부 지원금 지원에 따른 의무이행 사항을 준수한다는 증표로 지원금 323만원의 두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신용보증보험을 가입하고, 그 보험증권을 협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의무사항 이행각서(2)

제6조(의무이행 사항) 협약대상 사업자는 협약기간 동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이하 ‘법’이라함)에 따른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1. 법 제27조를 위반하여 품질기준에 맞지 않는 석유제품을 판매하지 않는다.
2.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하지 않는다.
3.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8호를 위반하지 않는다.

단, 석유사업법 제27조, 제29조, 제39조로 위반되었으나 행정처분이 ‘경고’로 확정된 경우는 제외

제7조(지원금 환수) 협약대상 사업자가 제6조에 따른 의무이행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신용보증보험을 통해 조건부 지원금을 환수한다.

단, 제6조제2호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지원금의 두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제8조(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협약대상 사업자는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 협약 및 운영과 관련하여 제출한 개인 또는 사업자 정보(품질검사 정보 등)를 원활한 사업의 운영을 위해 공익목적, 협약 만족도 조사 또는 홍보 등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제9조(변경사항 제출) 협약대상 사업자는 협약기간동안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변경 사항 발생 시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운영기관에 변경 내역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영주체(상호 및 대표자) 및 상표 변경
2. 물량구매계약서 변경(정유사 상표 주유소 등 해당자에 한함)
3.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변경(임대사업자 등 해당자에 한함)

제10조(기타) 협약대상 사업자는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 협약 만료 또는 해지에 따른 협약물 제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유소 시설훼손에 대해 일체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

제11조(유효기간) 이 각서는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 협약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단, 유효기간의 산정에 휴업(법 제12조에 따른 휴업신고) 등으로 주유소 영업을 하지 않은 기간(최대 6개월)은 제외한다.

20 년 월 일

○○주유소 대표자

(서명 또는 인)

③ 협약차수 6년차 이상 업체

의무사항 이행각서(1)

주유소(이하 ‘지원대상 사업자’)는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 협약을 위한 지원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한국석유관리원)로부터 조건부지원금을 지원받고, 향후 품질인증주유소의 운영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이행각서(이하 ‘각서’)를 제출한다.

제1조(목적) 본 각서는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에 협약한 품질인증주유소의 사후관리(의무 이행사항, 제재사항 등)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반기준) 협약대상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및 한국석유관리원이 지원하는 사항 등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 운영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운영 매뉴얼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한국석유관리원 유권해석에 따른다.

*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개정으로 기준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시점부터 적용한다.

제3조(품질검사)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에 협약한 경우 연 6회 이상 품질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제4조(협약비용)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 연간 협약비용 369만원(VAT 포함)을 최종 협약대상임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한국석유관리원으로 납부하여야 한다.(예금주 : 한국석유관리원, 우리은행 309-04-101893)

1. 협약비용에 대한 연간 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년(365일)으로 한다.

제5조(조건부 지원금) 협약대상 사업자는 제6조에 따른 의무이행 사항을 준수한다는 조건으로 제4조의 협약비용 중 일부인 185만원을 아래 사항에 따라 조건부 지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1. 협약대상 사업자는 조건부 지원금 지원에 따른 의무이행 사항을 준수한다는 증표로 지원금 185만원의 두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신용보증보험을 가입하고, 그 보험증권을 협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의무사항 이행각서(2)

제6조(의무이행 사항) 협약대상 사업자는 협약기간 동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함)에 따른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1. 법 제27조를 위반하여 품질기준에 맞지 않는 석유제품을 판매하지 않는다.
2.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하지 않는다.
3.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8호를 위반하지 않는다.

단, 석유사업법 제27조, 제29조, 제39조로 위반되었으나 행정처분이 ‘경고’로 확정된 경우는 제외

제7조(지원금 환수) 협약대상 사업자가 제6조에 따른 의무이행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신용보증보험을 통해 조건부 지원금을 환수한다.

단, 제6조제2호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지원금의 두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제8조(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협약대상 사업자는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 협약 및 운영과 관련하여 제출한 개인 또는 사업자 정보(품질검사 정보 등)를 원활한 사업의 운영을 위해 공익목적, 협약 만족도 조사 또는 홍보 등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제9조(변경사항 제출) 협약대상 사업자는 협약기간동안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변경 사항 발생 시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운영기관에 변경 내역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영주체(상호 및 대표자) 및 상표 변경
2. 물량구매계약서 변경(정유사 상표 주유소 등 해당자에 한함)
3.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변경(임대사업자 등 해당자에 한함)

제10조(기타) 협약대상 사업자는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 협약 만료 또는 해지에 따른 협약물 제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유소 시설훼손에 대해 일체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

제11조(유효기간) 이 각서는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 협약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단, 유효기간의 산정에 휴업(법 제12조에 따른 휴업신고) 등으로 주유소 영업을 하지 않은 기간(최대 6개월)은 제외한다.

20 년 월 일

○○주유소 대표자

(서명 또는 인)

④ 자부담 주유소

의무사항 이행각서(1)

주유소(이하 ‘지원대상 사업자’)는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 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품질인증주유소의 운영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이행각서(이하 ‘각서’)를 제출한다.

제1조(목적) 본 각서는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에 협약한 품질인증주유소의 사후관리(의무 이행사항, 제재사항 등)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반기준) 협약대상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및 한국석유관리원이 지원하는 사항 등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 운영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운영 매뉴얼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한국석유관리원 유권해석에 따른다.

*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개정으로 기준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시점부터 적용한다.

제3조(품질검사)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에 협약한 경우 연 8회 이상 품질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제4조(협약비용)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 연간 협약비용 554만원(VAT 포함)을 최종 협약 대상임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한국석유관리원으로 납부하여야 한다.(예금주 : 한국석유관리원, 우리은행 309-04-101893)

1. 협약비용에 대한 연간 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년(365일)으로 한다.

제5조(의무이행 사항) 협약대상 사업자는 협약기간 동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이하 ‘법’ 이라함)에 따른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1. 법 제27조를 위반하여 품질기준에 맞지 않는 석유제품을 판매하지 않는다.
2.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하지 않는다.
3.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8호를 위반하지 않는다.

단, 석유사업법 제27조, 제29조, 제39조로 위반되었으나 행정처분이 ‘경고’로 확정된 경우는 제외

의무사항 이행각서(2)

제6조(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 협약대상 사업자는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 협약 및 운영과 관련하여 제출한 개인 또는 사업자 정보(품질검사 정보 등)를 원활한 사업의 운영을 위해 공익목적, 협약 만족도 조사 또는 홍보 등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제7조(변경사항 제출) 협약대상 사업자는 협약기간동안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변경 사항 발생 시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운영기관에 변경 내역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영주체(상호 및 대표자) 및 상표 변경
2. 물량구매계약서 변경(정유사 상표 주유소 등 해당자에 한함)
3.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변경(임대사업자 등 해당자에 한함)

제8조(기타) 협약대상 사업자는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 협약 만료 또는 해지에 따른 협약물 제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유소 시설훼손에 대해 일체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

제9조(유효기간) 이 각서는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 협약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단, 유효 기간의 산정에 휴업(법 제12조에 따른 휴업신고) 등으로 주유소 영업을 하지 않은 기간 (최대 6개월)은 제외한다.

20 년 월 일

○○주유소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6호 서식] 품질인증주유소 관리대장

품질인증주유소 관리대장									
협약번호	관할본부	업체명	대표자	구분 (신규/재협약)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협약 차수	협약일
					지역	시군구			

[별지 제7호 서식] 공급유류 품질확인 시험분석 결과서

공급유류 품질확인 시험분석 결과서

협 약 업 소	업체명	
	주 소	
	대표자	

분석결과 내용

의뢰일		의뢰시각	
의뢰유종	제품공급일자	출하전표 번호	소견
자동차용 휘발유			가짜휘발유 의심
자동차용 경유			가짜경유 의심

위 성적서는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 협약에 따라 협약업체가 의뢰한 시료에 대해 1차 스크린 시험분석 결과입니다.

20 . . .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 상기 시험분석 결과는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 협약에 따라 품질인증주유소로 공급되는 제품의 이상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써, 동 분석결과는 법률적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별지 제8호 서식] 품질관리 컨설팅 현장점검표

품질관리 컨설팅 현장점검표

협약번호		점검일	
주유소명		대표자	

필수항목	① 협약 BI가 규정된 곳(가격표시판, 판넬, 기둥)에 부착·유지(훼손여부)되고 있는가?	예	아니오
	② 협약 업체가 협약 BI를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가?	예	아니오
	③ 협약물이 훼손되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가?	예	아니오
	④ 공급유류 품질확인용 시료용기는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가?	예	아니오
품질관리	⑤ 석유제품 품질기준 변경시기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가? (휘발유 : 증기압, 경유 : 유동점, 세탄지수)	예	아니오
	⑥ 공급업체로부터 정상적인 제품을 공급받고 있는가? (가짜석유, 무자료거래, 면세유 등 불법제품 인수여부)	예	아니오
	⑦ 이동판매차량의 배달·이동판매 절차를 알고 있는가?	예	아니오
	⑧ 천재지변으로 저장시설에 수분 유입 가능성이 있는가?	예	아니오
시설관리	⑨ 저장시설 등 등록된 시설 이외 시설이 있는가?	예	아니오
	⑩ 정기적인 주유기 검정을 하고 있는가?	예	아니오
기타	⑪ 최근 석유사업법 개정 동향을 인지하고 있는가? (품질기준 변경사항, 위법행위 처분 변경사항)	예	아니오

보완 및 개선의견	<input type="radio"/> 협약 BI 관련 : <input type="radio"/> 품질관리 관련 : <input type="radio"/> 시설관리 관련 :
애로사항	

점검총평	매우양호	양호	보통	개선요망
확인자	주유소	직책	성명	(서명)

* 상기 확인 점검은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 협약에 따라 품질관리 지원을 위한 컨설팅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으로서, 동 내용은 어떠한 법률적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별지 제9호 서식] 공급유류 품질확인 관리대장

공급유류 품질확인 관리대장									
협약업체	품질확인 의뢰일	의뢰시각	유종	건수	인계자 (서명)	인수자 (서명)	유선결과통보 시각	소견	통화자 (서명)
협약업체	2022.3.1	18:00	휘발유	1	홍길동	김철수	2022.3.2., 09:00	가짜석유	최영희